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사·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연임 제한〉
■ 채현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092호)

2026.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채현일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5. 12. 10.
3. 회 부 일 : 2025. 12.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정하고 있고, 다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한해서만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연임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음에 따라 일부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경우 2번 연속 연임을 하여 15년 넘게 재임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장기 재임에 따른 공정성 논란 등 부작용을 우려하여 연임 제한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연임할 수 없도록 하되,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장기 재임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 임기 중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연임할 수 없도록 하되, 임기가 끝난 후 후임자가 위촉되지 않은 상황에 한하여 후임자 위촉 시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第8條(委員의 任期) (생략)	第8條(委員의 任期)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설>	② <u>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연임할 수 없다. 다만, 임기가 끝난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u>

현행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정하고 있고, 다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한해서만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당초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경우에도 연임에 대한 제한이 없었으나, 이들의 장기 재임으로 인한 부작용 방지 등을 위해 2016년 일부개정으로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규정이 마련된 것임.¹⁾

1) [법률 제13756호, 2016.1.15., 일부개정] 개정이유 중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기 규정 》

구분	개정(2016.1.15.) 이전	개정(2016.1.15.) 이후
위원의 임기 (제8조)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기는 6년으로 함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기는 6년으로 하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가능

※ 관련 법 규정 등을 참고하여 작성

그런데,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달리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여전히 연임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어 장기간 재임하는 경우가 존재하는바, 장기 재임에 따른 지역 내 유력 정치인 등과의 사적 네트워크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선거관리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2025년 8월 기준으로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 135명 중 1회 이상 연임하고 있는 위원은 총 24명이며, 이 중에는 세 차례 연임하여 15년 이상 활동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²⁾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선 현장의 선거관리기관으로서 후보자 및 정당·선거관계자와의 직접 접촉을 통한 선거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는 전체 선거관리의 공정성 확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는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장기 근속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고 임기 중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임기를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오마이뉴스, “무려 15년째 선관위 위원... 정말 괜찮은 걸까?”, 2024.5.24.

《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연임 현황(2025.8.3.기준) 》

시·도명	현원	연임 위원 수	비율
서울	8	1	12.5%
부산	8	1	12.5%
대구	8	1	12.5%
인천	8	2	25.0%
광주	8	2	25.0%
대전	8	3	37.5%
울산	8	3	37.5%
세종	8	1	12.5%
경기	8	3	37.5%
강원	8	2	25.0%
충북	8	1	12.5%
충남	8	1	12.5%
전북	8	0	0.0%
전남	8	1	12.5%
경북	8	2	25.0%
경남	8	0	0.0%
제주	7	0	0.0%
계	135	24	17.8%

※ 각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 1회 이상 연임하고 있는 위원의 수를 파악한 것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가공

이에 개정안은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연임할 수 없도록 하되, 임기가 끝난 후 후임자가 위촉되지 않은 상황에 한하여 후임자 위촉 시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장기 재임으로 인한 공정성 논란 등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선거에 대한 대국민

신뢰가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음.

또한 이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반면,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경우 이와 같은 제한이 없었던 것이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이는데, 개정안에 따른 연임제한 규정이 도입될 경우 형평성 제고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조치가 될 수 있을 것임.

다만, 지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할 인력 풀(Pool)의 부족으로 위원 위촉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가능하겠으나, 후임자가 위촉되지 않는 경우 임기가 끝난 위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규정을 마련하고 있어, 개정안에 따른 부작용은 크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 여부는 위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입법취지, 각 위원별 추천권자가 상이한 점, 중요 의사결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처리하고 있는 점, 선거의 공정성·신뢰성 확보 및 안정적 선거관리의 중요성, 도입 시 장단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3